

2015년 제1차 극지법연구회

제6부속서 국내이행입법의 애의사례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 이현미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목 차

1. 개요

2. 스웨덴 ‘남극법’

3. 핀란드 ‘남극의 환경보호에 관한 법’

4. 영국 ‘남극법’

5. 각국 입법 비교

6. 결론

1. 개요

▪ 제6부속서 비준국

- 총 11개국: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페루, 폴란드,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영국

▪ 국내입법현황 **극지연구소**

- 2015년 현재 총 6개 국가(핀란드, 러시아, 호주, 영국, 노르웨이, 남아공)가 제6부속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제정 또는 제정 진행 중
- 그 중 핀란드, 호주, 영국, 노르웨이 4개국이 남극조약 사무국에 자국 이행입법을 제출

* 스웨덴은 스웨덴 극지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www.polar.se)

■ 스웨덴

- 2006년 기존 '남극법' 개정
- 총 13장 38개 조문
- '남극규칙'에서 세부사항 규정

■ 핀란드

- 2006년 기존 '남극법' 개정
- 총 7장 42개 조문
- 제6a장에서 배상책임 관련 사안 규정

■ 영국

- 2013년 기존 '남극법' 개정
- 총 8장 18개 조문
- 제15부에서 환경적 비상사태 관련 사안 규정

2. 스웨덴 '남극법'

▪ 예방조치

- [제7조] 남극활동 운영자는 환경적 비상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 및 기타 예방조치를 취해야 함
- ☞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제6부속서 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

■ 비상계획

- [제7조] 운영자는 남극활동 개시 전 비상계획 작성, 비상계획은 가장 최신의 정보로 유지
 - [시행령 제6조] 비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사고에 대한 보고절차, 사용가능한 자원, 자원동원 방법, 대응 조치 결정 방법, 문서화 절차, 훈련 방법
- ☞ 법에서는 간단한 규정만을 두고 시행규칙에서 비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 단 이러한 비상계획 수립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 대응조치

- [제9조] 운영자의 활동으로 인해 환경적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영자 및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야 함
- ☞ 제6부속서 상의 내용을 간략히 규정하고 있을 뿐 합리적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 통보절차

- [시행규칙 제9조] 남극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정보를 수령하는 주체는 스웨덴 극지연구소이며, 이를 관련 당사국 및 기타 당사국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음
- ☞ 법에는 통보절차 관련 규정이 없으며, 시행규칙에서 정보의 수령 주체를 스웨덴 극지연구소로 규정. 단, 구체적인 통보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 대응조치 실패에 따른 책임

- [제19조] 대응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운영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조치를 취한 당사국에게 보상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제20조] 운영자 및 다른 당사국 중 아무도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운영자는 자국 정부에 의해 지명되는 권한 당국에게 보상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음. 보상금액은 취해졌어야 하는 대응조치 비용과 가능한 한 일치하여야 함
- [시행규칙 제5조] 보상은 스웨덴 극지연구소에 지불되어야 하며, 스웨덴 극지연구소는 이 금액을 남극환경보호기금에 전달

☞ 비국가운영자의 대응조치 이행의무 실패에 대하여 다른 당사국이 대응조치를 취한 경우 그 당사국에게 직접, 아무도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스웨덴 극지연구소에 대응조치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 스웨덴 극지연구소는 수령한 금액을 기금에 전달

■ 소송

- [제25조] 비국가운영자를 대신하여 대응조치를 취한 당사국은 3년 이내에 스톡홀름 민사법원에서 보상절차를 위한 소송 제기
- ☞ 스웨덴 비국가운영자를 대신하여 대응조치를 취한 다른 당사국은 조치의 시행 3년 이내에 스웨덴 스톡홀름 민사법원에서 해당 비국가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함

■ 보험 및 기타 재정보증

- [제14조] 환경적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하여 운영자가 자신의 재정적 책임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담보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활동에 대한 허가 부여.
국가운영자는 담보 제공의무 면제
- ☞ 운영자의 남극활동에 대한 허가의 발급조건으로서 보험가입 여부를 요구, 국가운영자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 면제

■ 운영자의 의무위반 처벌

- [제16조] 허가 소지자가 허가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허가 철회 가능
 - [제34조] 대응조치 의무 위반의 경우 벌금형 또는 최대 2년의 구금형 선고
 - [제35조] 예방조치 또는 비상계획 의무 위반의 경우 벌금형 선고
- ☞ 허가 상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허가 취소, 그 밖에 대응조치 의무 위반은 벌금형 또는 구금형, 예방조치 및 비상계획 의무 위반은 벌금형 선고

3. 핀란드 '남극의 환경보호에 관한 법'

▪ 예방조치

- [제14조]허가 신청서에 예방조치에 관한 보고서 첨부
 - [제35a조] 운영자는 환경적 비상사태 및 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운송수단 및 참여 인력에 대한 준비와 훈련 필요
- ☞ 운영자는 활동허가 신청시 예방조치 관련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 핀란드 정부는 이에 대한 허가 발급 또는 발급 거부를 통해 예방조치 수행을 요구

■ 비상계획

- [제14조] 허가 신청서에 비상계획 및 대응계획 첨부
 - [제35a조] 운영자는 환경적 비상사태를 방지하고 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준비해야 함
- ☞ 허가 발급조건으로서 환경적 비상사태에 대한 비상계획을 요구

▪ 대응조치

- [제14조] 허가 신청서에 비상계획 및 대응계획 첨부
 - [제35a조] 운영자는 환경적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준비해야 하며, 대응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인간의 건강 및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 비상사태의 경우 취해지는 검색, 구조 및 피난 조치 등
 - [제35b조] 운영자는 자신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적 비상사태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 허가에 대한 신청요건으로서 비상계획과 함께 대응계획을 제출, 환경적 비상사태의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단 대응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통보절차

- [제35a조] 운영자는 모든 환경적 비상사태 및 기타 예외적인 상황을 정부 부령에 의해 명시된 당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 운영자는 환경적 비상사태의 발생 즉시 지정된 정부 부처에 이를 알려야 함. 구체적인 통보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응조치 실패에 따른 책임

- [제35c조] 1. 대응조치 의무 이행에 실패한 운영자는 다른 당사국의 대응조치에서 발생된 비용을 보상
- 2. 운영자 및 다른 당사국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영자는 취해졌어야 할 대응조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재무부에 지불
- 4. 남극환경보호기금이 설립되면 허가 발급 당국은 해당 금액을 기금으로 이전

☞ 운영자의 대응조치 실패에 대하여 아무런 당사국도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운영자는 자신이 취했어야 할 대응조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핀란드 재무부에 지불. 기금에 해당 금액을 이전하는 주체 역시 재무부인 것으로 추정

■ 소송

- [제35f조] 1. 운영자를 대신하여 대응조치를 취한 당사국은 대응조치 의무 이행에 실패한 운영자를 대상으로 핀란드 Vaasa 행정법원에서 비용 상환을 위한 소송 제기 2. 다른 당사국에 의해 아무런 대응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경우 운영자가 재무부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허가발급당국은 해당 운영자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 3. 국가운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운영자를 대신하여 대응조치를 취한 다른 당사국 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응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운영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취해졌어야 할 대응 조치 비용을 상환

■ 보험 및 기타 재정보증

- [제14조] 3. 허가 신청에 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담보에 관한 보고서 첨부
 - [제18조] 1. 허가 발급시 운영자의 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담보에 필요한 규칙을 허가에 첨부
 - [제35a조] 4. 운영자는 대응조치 의무 이행 실패에 따른 재정적 책임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보증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보험은 검색, 구조, 의학적 치료 및 피난을 위한 모든 비용을 보장하기에 충분해야 함. 국가운영자에게는 보험 의무 면제
- ☞ 허가 신청 조건으로 보험가입 요구, 허가상에 보험 관련 규칙을 첨부, 보험의 범위를 명시. 국가운영자에게는 보험 가입의무 면제

■ 운영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제40조] 1. 환경적 비상사태 관련 규정에 언급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
- [제38조] 그 밖의 환경에 대한 피해의 형벌은 형법 제48장 제1조에 규정된 바에 따름

☞ 환경적 비상사태 관련 규정에 언급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 보다 구체적인 형벌에 대해서는 형법 적용

4. 영국 '남극법'

▪ 예방조치

- [제5조] 2. 남극활동 운영자는 자신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적 비상사태 및 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해야 함 3. 예방조치의 내용: 특별한 설비 및 운송방법, 시설의 운영 절차, 특화된 훈련 등 7. 예방조치 의무 이행에 실패한 자는 유죄로 봄 9.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기소됨

☞ 예방조치의 내용은 제6부속서와 동일하게 규정. 예방 조치 의무 불이행을 명백하게 유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까지 함께 명시함으로써 엄격한 이행을 요구

■ 비상계획

- [제5조] 4. 남극활동 운영자는 반드시 환경적 비상사태에 대한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비상계획 내용: 환경적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한 대응조치 및 통보 계획 등
- 8. 비상계획 수립 의무를 위반한 자는 유죄로 봄
- 9.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기소됨

☞ 예방조치와 마찬가지로 비상계획 수립 의무를 위반한 자는 유죄로서 기소됨

▪ 대응조치

- [제1조] 1. 환경적 비상사태의 발생시 운영자는 합리적이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야 함 2.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에 실패한 자는 유죄로 봄 3.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기소됨

☞ 대응조치에 대하여 비교적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조치 및 비상계획과 마찬가지로 위반시 유죄로서 기소됨

▪ 통보절차

- [제7조] 1. 운영자는 환경적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장관에게 공지하여야 함 3. 즉각적인 공지에 실패한 자는 유죄로 봄 5.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대하여 기소됨

극지연구소

☞ 스웨덴 및 핀란드는 단지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데에 그치고 있는 반면, 영국은 통보의무 실패 역시 유죄로서 기소 대상이 됨

▪ 대응조치 실패에 따른 책임

- [제1조] 1. 환경적 비상사태에 대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에 실패한 자는 유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대하여 기소됨 4. 벌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취해졌어야 할 대응조치 비용에 상응하는 액수를 최대한 반영
- [제2조] 운영자로 인해 발생한 환경적 비상사태에 대하여 영국정부 또는 다른 당사국이 대신 대응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운영자는 대응조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제3조] 운영자가 영국정부인 경우 취해졌어야 할 대응조치 비용을 기금에 지불

☞ 비국가운영자에 의해 발생한 환경적 비상사태에 대하여 다른 당사국이 대신 대응조치를 취한 경우 그 당사국에게 대응조치 비용 지불, 아무런 대응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경우 벌금의 형태로 영국정부에 지불. 국가운영자의 경우 아무런 대응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면 기금에 지불

■ 소송

- [제2조] 3. 운영자를 대신하여 다른 당사국이 대응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운영자는 그 비용을 다른 당사국에게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스웨덴 및 핀란드와 달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국내 행정 법원을 명기하고 있지 않음

■ 보험 및 기타 재정보증

- [제6조] 1-2. 남극활동 운영자는 환경적 비상사태에 대한 적절한 보험 담보 또는 기타 재정적 보증을 확보하여야 함
6-7. 이를 준수하는 데에 실패한 자는 유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기소됨

☞ 보험가입 의무 및 재정보증 확보 의무를 위반한 운영자는 유죄로 기소되며, 단 국가운영자에 대해서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됨

■ 운영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제1조] 2-3. 대응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는 유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기소됨 4. 벌금 액수를 결정할 때에는 취해졌어야 할 대응조치 비용을 고려해야 함
- [제5조] 7-9. 예방조치 및 비상계획 수립 의무를 위반한 자는 유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기소됨
- [제6조] 6-7.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는 유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기소됨
- [제7조] 3-5. 통보절차를 위반한 자는 유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기소됨

☞ 각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개별적으로 규정

5. 각국 입법 비교

	스웨덴	핀란드	영국
예방조치	간략 규정	허가신청서에 예방조치 보고서 첨부	상세 규정
비상계획	시행규칙에서 상세 규정	허가신청서에 비상계획 첨부	상세 규정
통보절차	스웨덴 극지연구소	간략 규정	간략 규정
대응조치실패책임	스웨덴 극지연구소	재무부	벌금
소송	스톡홀름 민사법원	Vaasa 행정법원	국내법원을 특정하지 않음
보험 및 기타 재정보증	허가 발급 조건	허가 발급 조건	간략 규정
의무위반 처벌	허가철회, 벌금형, 최대2년의 징역형	벌금형, 형법적용	벌금형, 최대2년의 징역형

6. 결론

■ 입법형식

- 기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세부사항추가

■ 예방조치 및 비상계획

- 법에서 남극활동에 대한 허가신청시 환경적 비상사태에 대한 예방조치 및 비상계획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요구
-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예방조치 및 비상계획의 세부 내용 명시

■ 대응조치

- 법에서 대응조치 의무 간략히 규정
-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대응조치의 세부내용 명시

■ 통보절차

- 법에서 통보의무를 간략히 규정
-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보수령 주체를 극지연구소로 명시

■ 대응조치 실패 책임

- 법에서 대응조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간략히 규정
-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책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운영자의 대응조치 실패에 대해 다른 당사국이 대신 대응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운영자는 자신이 취했어야 할 대응조치 비용을 그 국가에 지불
- 아무도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극지연구소에 대응 조치 비용 지불
- 극지연구소는 수령한 금액을 기금에 전달

■ 소송

-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국내법원을 법 또는 시행령에 명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보험 및 기타 재정보증

- 법에서 허가의 발급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규정
-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요구되는 보험의 내용을 상세 규정
- 국가운영자에게는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됨을 명시

■ 의무위반의 처벌

- 환경적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에 실패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법 제25조)

감사합니다 !

극지연구소

